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31일

호명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신 *식	신 *식 1969-05-26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	직권말소 2022-08-31
윤 *남	윤 *남 1972-04-28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	직권말소 2022-08-31